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0659-14

NARS 현장조사보고서 제33호 2014. 9. 19.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현장조사보고서 Vol. 33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이현출(정치행정조사심의관)
조규범(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2014. 9. 19.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요 약

2013년 11월 유럽의회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 의회조사서비스와 도서관에 대한 상세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세계 최상급의 입법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를 설립하였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 목적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기타 집행기구에 대하여 독립적·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조사와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회조사처(EPRS)를 직접 방문하여 유럽의회조사처 설립의 기본개념과 철학, 새로운 입법·정책 지원서비스, 주요 조직과 기능, 영향평가서비스의 주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로 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홍수 시대에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적 입법지원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조사처는 조직설립의 기획단계에서 통합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기본개념과 핵심철학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의원연구서비스, 도서관, 영향평가서비스를 통합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각 입법지원기구들이 입법 전과정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도서관 간의 기능적 협력방안의 모색과 함께, 법안심의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간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국회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규제, 부패, 성별, 갈등, 기술 등 산재한 각 부문별 영향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

가를 참고하여 한국형 영향평가제도를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영향평가의 개념은 오직 '입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예산, 결산, 결의안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일률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부문별 영향평가를 '영향평가'라는 용어로 통합하고, 이를 사전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과학기술평가, 국정과제이행평가 등의 기능별 접근과 함께 각 기능별 접근에서의 분야별 접근을 실시하는 영향평가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률 집행과정에서 국회의 사후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한 검정작업은 물론, 법률이나 정책 시행 이후의 사후평가도 포함하여 집행부와 각국의 이행 및 운영체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사후적 감독기능이 미약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에 대한 의원 및 위원회의 사후적 영향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지원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입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조사처는 유럽연합 기능의 모든 영역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면보고 확대를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연구발간물에 사용된 모든 그래프와 챠트들을 온라인 '그래픽 웨어하우스'에 수집하여 의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조사회답과 각종 보고서에서도 온라인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국회 입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차 례

□ 요약

Ⅰ. 현장조사 개요 / 1

1. 조사배경 및 목적 ····· 1
2. 조사일시 및 방문기관 ····· 3
3. 조사내용 및 방법 ····· 4

Ⅱ. 유럽의회조사처 설립의 배경과 조직 구조 / 7

1. 설립배경 ····· 7
2. 조직 설립의 기본 개념과 철학 ····· 8
3. 유럽의회조사처 조직 구성 ····· 11
4. 새로운 입법·정책 지원서비스 ····· 14

Ⅲ.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 / 18

1. 의원연구서비스실의 조직과 기능 ····· 18
2. 의원연구서비스실의 운영 방식 ····· 19
3. 의원연구서비스실의 발간물 ····· 19

Ⅳ. 유럽의회조사처 도서관 / 31

1. 도서관의 조직과 기능 ····· 31
2. 도서관의 운영 방식 ····· 33

Ⅴ.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 / 38
1.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서비스 ····· 38
2.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조직과 기능 ····· 44
3.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운영 방식 ····· 47
4.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발간물 ····· 50

Ⅵ.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의 시사점 / 58
1. 입법홍수 시대에 좋은 법률 만들기: 통합적 입법지원체계 필요 ····· 58
2. 영향평가의 도입과 통합적 운용방안 모색 ····· 60
3. 법률 집행과정의 국회 감독 강화 ····· 65
4. 입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 67

Ⅶ. 결론 / 69

□ 참고문헌

표 차 례

[표 1] 현장조사의 시간별 일정 ····· 3
[표 2] 유럽의회조사처에 대한 사전요청자료의 내용 ····· 5
[표 3] 본회의 개관(Plenary at a glance) 보고서의 구성 사례 ····· 20
[표 4] 인포그래픽 개관(Infographic at a glance) 보고서의 구성 사례 ····· 22
[표 5] 브리핑(Briefing) 보고서의 구성 사례 ····· 24
[표 6] 통계스포트라이트 브리핑(Briefing) 보고서의 구성 사례 ····· 26
[표 7] 심층분석 보고서의 구성 사례 ····· 28
[표 8] 영향평가 핵심분석단계 요약 ····· 39
[표 9] 유럽부가가치평가 개관 보고서의 구성 사례 ····· 52
[표 10] STOA 옵션 브리프 보고서의 구성 사례 ····· 53
[표 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세부 검정 보고서의 구성 사례 ···· 56
[표 12] 영향평가제도의 종류와 근거법령 ····· 62

그 림 차 례

[그림 1] 유럽의회조사처의 조직도 ····· 13
[그림 2] 본회의 개관(Plenary at a glance) 보고서 ····· 21
[그림 3] 인포그래픽(Infographic) 개관 보고서 ····· 23
[그림 4] 브리핑(Briefing) 보고서 ····· 25
[그림 5] 통계스포트라이트(Statistical Spotlight) 브리핑 보고서 ····· 27
[그림 6] 심층분석(In-depth Analysis) 보고서 ····· 29
[그림 7] 그래픽 웨어하우스 ····· 30
[그림 8] 유럽의회도서관의 신개념(2011-2013) ····· 32
[그림 9] 유럽부가가치평가 개관 보고서 ····· 51
[그림 10] 이행평가 개관 보고서 ····· 52
[그림 11] STOA 옵션 브리프 보고서 ····· 54
[그림 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세부 검정 보고서 ····· 57

사 진 차 례

[사진 1] 유럽의회조사처 임원진과의 간담회 장면 ····· 6
[사진 2] 유럽의회 벨기에 본회의장 전경 ····· 6
[사진 3] 유럽의회조사처 도서관 시찰 장면 ····· 33
[사진 4] 유럽의회조사처 임원진과의 기념촬영 ····· 71

Ⅰ. 현장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국회가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경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및 입법역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전문성 부족의 주된 요인의 하나는 행정부와의 관계에 존재하는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행정국가 현상의 심화와 오늘날 전문적인 과학기술 영역의 대두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은 다양한 선택 대안 중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역선택을 부추겨 좋은 정책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의 의회는 의원들과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지원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지원기구는 2차 대전 이후 양적·질적 측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음

□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입법지원기구가 등장하여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의 기능 강화에 이바지해 왔음

○ 한국 국회의 입법지원기구 확장의 역사는 국회의 기능강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출범 이후 약 7년이 지남에 따라 국회의원과 위원회로부터의 질의회답과 보고서 발간 건수가 폭증하였고,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의원입법의 양적 팽창에 기여하였음

-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조사회답서는 2008년 1,938건에서 2013년 6,431건으로, 보고서 발간은 2008년 28건에서 2013년 258건으로, 세미나·전문가간담회·정책브리핑 횟수는 2008년 21건에서 2013년 311건으로 급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의 양적팽창에 걸맞는 질적 수준의 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 법안 발의 건수에 비해 가결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비생산적인 중복발의에 따라 대안폐기 또는 임기만료 폐기되어 의원입법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입법지원기구의 획기적인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1)]

□ 이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 일행은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를 직접 방문하여 이 조직의 설립의 원인이 된 기본개념과 철학, 새로운 입법·정책 지원서비스, 주요 조직과 기능, 유럽의회조사처에서의 영향평가

1)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4년 6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의장 업무보고시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정지원을 위한 입법지원기구의 인력을 증원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며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절차 및 보고서 발간의 주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함

2. 조사일시 및 방문기관

□ 벨기에에 소재한 유럽의회의 유럽의회조사처를 2014년 6월 20일 09:00시부터 13:00시까지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조사에 참여한 국회입법조사처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
○ 이현출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조규범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 김대회 기획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김진 기획협력담당관실 입법조사원

□ 유럽의회조사처장(Director General of EPRS)인 Mr. Anthony Teasdale의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조직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의원연구서비스실장(Director of Member's Research Service) Mr. Etienne Bassot과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Director of Impact Assessment & European Added Value) Mr. Joseph Dunne 등 각 실장과 주요 과장의 설명과 질의 및 응답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음

[표 1] 현장조사의 시간별 일정

시 간	내 용
09:00	• 유럽의회조사처 도착 - 정보전문가 Ms. Isabell Gautier의 안내

시 간	내 용
09:30	•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조직 구조와 기능 -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의 발표
09:50	• 국회입법조사처(NARS)의 조직 구조와 기능 -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발표
10:15	•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실 - 의원연구서비스실장 Mr. Etienne Bassot의 발표
10:40	• 유럽부가가치 및 비유럽 비용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의 발표
11:05	• 유럽의회 본회의장 시찰 및 유럽의회의 기능 - 통신방문세미나과 Mr. Georges Stylianou의 안내
11:50	• 사전영향평가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 사전영향평가과장 Mr. Claudio Collovà의 발표 • 사후영향평가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 사후영향평가과장 Mr. Stephan Huber의 발표
12:30	•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 - 오프라인·온라인도서관서비스과장 Ms. Elke Ballon의 발표
13:00	• 질의응답
13:30	• 회의 종료

3. 조사내용 및 방법

□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가용한 유럽의회조사처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현장방문조사시 필요한 목록을 미리 요청하여 방문기간 동안 획득함

□ 방문전 유럽의회조사처에 요청한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 유럽의회조사처에 대한 사전요청자료의 내용

내 용
·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EPRS · Researcher recruitment process(e.g. educational background, qualification, etc.) · Results of the service satisfaction survey · Networking fo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professionals outside of the EPRS · Reports review process · Maintenance of nonpartisan posture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 Impact Assessment Guideline(2009) · Process and manual of Ex-Ante Impact Assessment and Ex-Post Impact Assessment · Transposition of EU legislation to the legal system at the domestic level and harmonization with the domestic values · Cases of Ex-Ante Impact Assessment and Ex-Post Impact Assessment · Scrutiny and Supervision of EU Parliament over the member state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EU laws · Periodical reports and products

□ 방문기간 동안 획득한 정보의 심층 분석 및 정리를 통하여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함

○ 추후 질의사항은 이메일과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회답을 받아 보고서에 반영함

[사진 1] 유럽의회조사처 임원진과의 간담회 장면

[사진 2] 유럽의회 벨기에 본회의장 전경

Ⅱ. 유럽의회조사처 설립의 배경과 조직 구조

1. 설립배경

□ 2013년 11월 1일 유럽의회는 같은 해 5월 20일에 있었던 유럽의회 집행부(Bereau)[2)]의 결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입법지원조직인 유럽의회조사처를 설립하였음

○ 이 결정 이후에 유럽의회 집행부와 예산위원회(Budgets Committee)는 공동실무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유럽의회 의원들에 대한 지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공동실무작업반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할 입법지원 영역과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입법지원 영역을 구분하여 확정하였음

○ 공동실무작업반은 유럽의회 의원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와 집행부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입법지원 영역으로 확정하여 권고하였음

○ 유럽의회조사처의 신설을 위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미국의 의회조사서비스와 도서관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및 비교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최상의 입법지원서비스 모델을 확정하였음

□ 결국 유럽의회조사처는 기존의 유럽의회 기구인 유럽의회도서관(Library

2) 유럽의회에는 임기 2년 반의 집행부(Bureau)가 있는데, 집행부는 1명의 의장과 14명의 부의장, 의회 행정을 담당하는 5명의 재무관(Quaestors)으로 구성됨. 유럽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정치그룹의 대표가 참가하는 확대집행부(Conference of Presidents)로 구성됨.

of European Parliament)과 영향평가실(Impact Assessment Directorates)을 통합하고, 여기에 의원연구서비스실(Directorarte of Members' Research Service)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음

2. 조직 설립의 기본 개념과 철학

□ 유럽의회 내에서 새로운 부서인 유럽의회조사처를 설립한 목적은 기존의 부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들을 강화하여 새로운 입법지원서비스로 발전시키는데 있음

○ 유럽의회가 의원들과 상임위원회에게 유럽연합과 관련한 정책 이슈에 대하여 독립적·객관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조사·분석을 제공하는 세계 최상급의 의회조사서비스(a world-class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역량을 갖추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3)]

□ 또한,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은 유럽연합 정책 전반에 관하여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기타 집행기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럽의회 의원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분야에서의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인 유럽의회조

3)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거치면서 회원국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유럽의회는 당시에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점차 그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유럽의회의 초창기 정책결정은 폐쇄된 공간에서 소수의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특정주제에 대하여 다수의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비전문가인 의원들에 대해 지식의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터뷰 내용).

사처는 기존의 도서관(Directorate for the Library)과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Directorate for Impact Assessment and European Added Value)을 통합하고, 취약한 부분이었던 의원연구서비스실(Directorate for the Members' Research Service)을 신설하였음[4)]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유럽의회조사처 설립과 함께 상당기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4년 7월 1일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출범하였음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의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브리핑과 개별 의원들을 위한 맞춤형 조사분석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의원들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발간함

□ 유럽의회조사처(EPRS)는 도서관,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 그리고 의원연구서비스 기능을 통합하여 다른 국가에서의 의회지원기구와는 달리 통합형 서비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특징임

□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의 핵심 철학은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착수한 업무에 독립적, 객관적, 권위적일 것

○ 모든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뒷받침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

○ 고객에 초점을 맞추어 의원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회답할 것

○ 의원과 보좌진을 위한 단일 창구를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할 것

4) 현재 유럽의회조사처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의원 개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조사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출판 등을 통한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개개인의 의원 이외에 위원회 등에 의한 일반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임(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터뷰 내용).

○ 모든 출판물과 서비스에 대하여 명료하고 단순한 브랜드를 사용할 것

○ 의원들에게 더 훌륭한 대면보고('in person' briefing)와 함께 보충적인 서면자료를 제공할 것

□ 이러한 원칙들은 '도서관의 신개념'(New Concept of the Library) 프로젝트의 형태로 구체화 될 것임

○ 이 프로젝트는 2011년 7월 유럽의회 집행부(Bureau)에 의해 시작되어 2013년 가을에 완료됨

○ 또한, 프로젝트는 의원들의 요구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직원의 폭넓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존 도서관에 의해 공급되던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음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많은 새로운 출판물이 발간되었고, 더 나은 인트라넷 사이트가 개발되었으며, 알림서비스, 전자책, 전자학습과 스마트폰과 테블릿을 위한 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였음

□ 소셜미디어를 통한 더 많은 서비스 이용과 도서출판과 세미나를 위한 장소로 '스피넬리 열람실'[5](Spinelli Reading Room)의 더 많은 사용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가시성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신개념 도서관에서 예견된 바와 같이 스피넬리 빌딩 1층의 새로운 의원열람실은 2014년 하반기에 오픈될 것임

□ 신개념 도서관의 적극적인 경험은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의 디자인과 설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

5) 이 열람실은 Altiero Spinelli 빌딩(ASP 또는 D3라고 부름) 내에 소재함.

○ 핵심적인 혁신조치들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로 편입됨

3. 유럽의회조사처 조직 구성

□ 유럽의회조사처는 다음 세 개의 '실'급 부서(directorates)에 14개의 '과'급 부서(units)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2개의 '과'급 지원 부서(units)를 두고 있음

○ 첫째, 의원연구서비스실(Directorate for the Members' Research Service)은 다음 네 개의 주제별 항목에 대한 브리핑과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과(units)로 구성됨

- 경제·과학정책과(Economic and Scientific Policies)
- 구조·통합정책과(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 제도·법률·예산과(Institutional, Legal and Budgetary Affairs)
- 대외정책과(External Policies)

○ 둘째, 도서관(Directorate for the Library)은 다음 네 개의 과(units)로 구성됨[6)]

- 오프라인·온라인도서관서비스과(On-site and Online Library Services)
- 유럽의회 역사기록보존소(Historical Archives of the Parliament)
- 대민회답과(Citizens' Enquiries)

6) 도서관의 경우 유럽연합과 관련한 30년 내외의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와의 정보 교환 및 일반 대중들의 요구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음. 도서관의 디지털화가 진행하면서 의원들은 온라인을 통한 자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터뷰 내용).

- 문서관리과(Transparency)

○ 셋째,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Directorate for Impact Assessment & European Added Value)은 다음 여섯 개의 과(units)로 구성됨[7)]

- 사전영향평가과(Ex-Ante Impact Assessment)
- 사후영향평가과(Ex-Post Impact Assessment)
- 유럽부가가치평가과(European Added Value)
- 과학기술옵션평가과(Science &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STOA)
- 유럽정상회의감독과(European Council Oversight)
- 정책수행평가과(Policy Performance Appraisal)

□ 유럽의회조사처 각 실(Directorates)의 부속한 과(Units) 이외에 처장을 보좌하는 수평적 구조의 '전략협력과'(Strategy & Coordination Unit)와 '운영지원과'(Resources Unit)를 두고 있음

□ 2013년 11월 1일 유럽의회조사처가 출범 당시 221개의 직위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기존의 유럽의회기획관리부서(Directorate-General for the Presidency)와 유럽의회내부정책부서(Directorate-General Internal Policies of the Union)로부터의 인력을 재배치한 것임

○ 이 중에서 의원연구서비스실에 75명을 비롯하여 도서관에 85명,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에 31명이 배정되었음[8)]

---

7) 유럽의회에서의 법은 일반적으로 유럽 내 회원국가의 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관장범위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음(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터뷰 내용).

8)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시 기존의 유럽의회도서관의 업무를 승계하였는데, 아직 구

○ 또한, 전략협력과와 운영지원과를 위하여 30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음

[그림 1] 유럽의회조사처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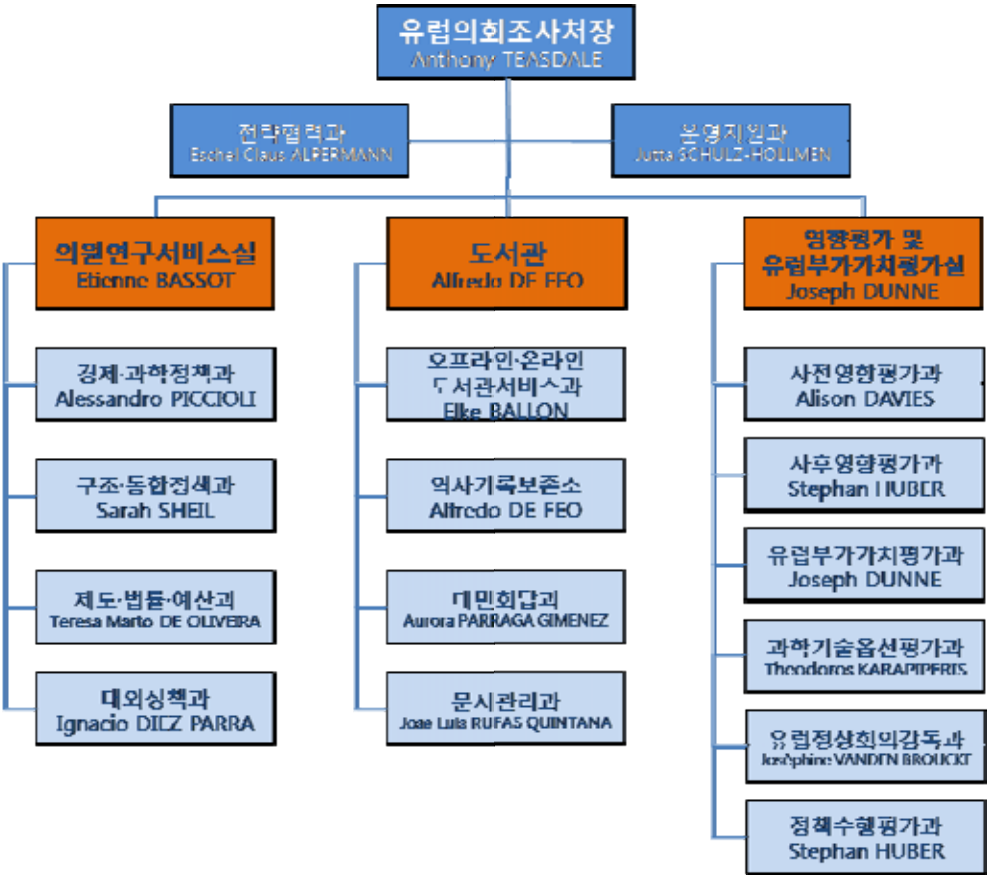

조직으로 개편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이후 5개의 실로 개편할 예정임(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터뷰 내용).

4. 새로운 입법 · 정책 지원서비스

가. 의원 핫라인

□ 유럽의회조사처는 의원들로부터의 모든 새로운 질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의원 핫라인'(Members' Hotlin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단일화된 접수창구(a single point-of-entry)를 설립하였음

○ 의원 핫라인은 온라인(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와 이메일 주소 eprs@europarl.europa.eu), 전화(내선번호 88100), 직접 대면(도서관 열람실), 그리고 팩스(내선번호 44990)을 통해 운영됨

○ 의회의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의원들의 요청들은 자동적으로 의원 핫라인에 연결됨

□ 의원 핫라인의 목적은 3시간 내에 모든 질의사항에 대한 초기대응을 하기 위함임

○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원 핫라인은 총 595개의 질의사항을 요청받았고, 그 중 424개는 의원들과 의원실로부터 받은 것이었는데 이 중 95퍼센트는 모두 회답이 완료되었음

나. 출판물

□ '브리핑'(Briefings),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 '통계스포트라이트' (Statistical Spotlight), '키소스'(Key-source) 등 기존의 도서관이 발간하던 출판물은 계속 발간되지만 그 발간 주체는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실'로 변경되었음

○ 이 출판물들의 발간 빈도수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내용은 시각적으로 더욱 세련되게 만들며, 새롭고 일관된 포맷과 더 좋은 그래픽, 통계 및 차트를 사용할 예정임

□ '개관'(At a glance) 시리즈는 1~2페이지 정도의 짧은 단편 시리즈로 현재 이슈에 대한 짧은 노트형식으로 제공되고, 더 긴 분량의 '심층분석'(In-depth Analysis) 시리즈는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 이슈 및 입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배경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다. 그래픽과 팟캐스트

□ 전자 '그래픽 웨어하우스'(Graphics Warehouse)는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로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서, 모든 유럽의회조사처의 그래픽과 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임

○ 의원들은 '그래픽 웨어하우스'의 모든 자료를 자신의 출판물에 이용할 수도 있음

○ 이 서비스는 앞으로 '통계 웨어하우스'(Statistics Warehouse)와 '지도 웨어하우스'(Map Warehouse)를 포함하여 더욱 확대될 예정임

□ 또한, 선도적인 프로젝트로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팟캐스트'(podcasts) 서비스는 2014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의원들은 이동 중이나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노트와 브리핑을 선별하여 확인·청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라. 새로운 인트라넷 사이트

□ 유럽의회의 의원들과 직원들이 이용하던 전통적인 도서관 인트라넷 사이트는 이미 유럽의회조사처의 인트라넷 사이트가 되었으며, 2014년 5월

에 더 넓은 영역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재개하였음

○ 이 서비스에는 뉴스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가능하며, 모든 유럽의회의 출판물과 공식적인 문서에 대한 접근,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제공, 책, 도서관에서의 이벤트 등의 제공이 포함됨

□ 인트라넷은 시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모범답변'(model answers)을 제공하는 부서를 두고, '유럽의회 역사기록보존소'(Historical Archives)의 더 많은 이용과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의 성과물이 최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싱크탱크들과 각국 의회도서관 연구서비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함

마. 유럽의회 공공 웹사이트에서의 싱크탱크의 역량

□ 새로운 유럽의회조사처는 기관 설립시에 웹사이트 내의 '싱크탱크'(ThinkTank)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요청받았음

○ 이에 2013년 8월부터 가장 최신의 유럽의회 출판물에 대한 공공접속을 위하여 단일화된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유럽의회조사처는 유럽의회의 다른 지원조직과 이 업무를 위해 협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업무에는 의회 조사·분석 결과물의 이용을 더욱 간소화하는 작업을 포함하였음

○ 여기에는 유럽의회조사처와 정책부처(Policy Departments), 기타 다른 정보소스들의 조사·분석 결과들을 포함함

□ 이러한 자료의 대중에 대한 공개는 유럽의회조사처의 블로그(epthinktank.eu에서 접속 가능)를 통해서도 이루어짐

○ 유럽의회조사처의 매우 중요하고도 새로운 산출물인 '유럽에 관한 기억해야 할 100권의 책'(One Hundred Books on Europe to Remember) 서비스는 유럽의 통합역사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는 유럽의회 홈페이지와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상에 게재되고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는 현재 '디지털 온라인 전략'(Digital Online Strategy)의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회 내·외부에서의 연구결과를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임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럽의회조사처 자료에 대하여 의원들이 의원실에서 직접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바. 싱크탱크와의 세미나와 연락관 제도

□ 유럽의회의 회기 시작과 함께 유럽의회조사처는 정책 이슈에 관한 몇 개의 전문가 세미나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모든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공개됨

○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유럽의회조사처에서 출간한 보고서와 관련된 것들임

○ 세미나와 워크숍은 싱크탱크들과 연구기관들, 의회도서관 연구서비스,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의 연락을 증진시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유럽의회 내에서 더욱 넓게 활용함

Ⅲ.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

1. 의원연구서비스실의 조직과 기능

□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실(Directorate for Members' Research Service : Directorate A)은 유럽의회의 모든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정책, 이슈 및 입법에 관한 독자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조사·분석을 제공함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주제별로 구성된 다음 4개의 과(units)로 이루어짐

○ 경제·과학정책과(Economic and Scientific Policies Unit)

○ 구조·통합정책과(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Unit)

○ 제도·법률·예산과(Institutional, Legal and Budgetary Affairs Unit)

○ 대외정책과(External Policies Unit)

□ 의원연구서비스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 기능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정책, 이슈 및 입법에 관한 개별 의원들의 특정 질의에 대한 맞춤식 조사·분석 회답자료 제공

○ 입법과정의 모든 단계에서의 중요한 유럽연합 정책과 입법제안에 관한 명료하고 읽기 쉬우며 내용이 풍부한 종합적 브리핑자료 제공

○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유럽연합 정책과 이슈에 관한 심층연구자료 제공

○ 유럽연합과 관련한 모든 이슈에 관한 개별의원 대면보고

○ 의회 내·외부 웹사이트의 사용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2. 의원연구서비스실의 운영 방식

□ 의원들은 그들의 관심분야에 관한 정보나 조사·분석 자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 의원들은 유럽의회조사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단일창구로서 '의원 핫라인'(Members' Hotline)을 이용할 수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 의원 핫라인(EPRS Members' Hotline)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 내선번호 88100 또는 이메일 eprs@europarl.europa.eu를 이용할 수 있음

□ 질의요구가 의원연구서비스실에 할당되면 최초 요구로부터 3시간 이내에 질의를 담당하게 될 전문가를 의원에게 고지함

□ 의원의 특정한 요구사항과 질의의 목적을 파악하고, 회답을 위한 가장 적절한 포맷의 선정을 위하여 의원실과 논의함

3. 의원연구서비스실의 발간물

가. 개관(At-a-glance) 보고서

□ 이 노트는 1~2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는 보고서이며,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한 간략한 소개나 어떤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위하여 제공되며, 다음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누어짐

○ 본회의 개관(Plenary at a glance) 보고서

- 본회의 이전에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짧은 노트의 시리즈
- 개관 보고서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2014년 4월 10일 발간된 '유럽연합의 재원'(Own resources of the European Union)이라는 본회의 개관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3] 본회의 개관(Plenary at a glance)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법적 근거(Legal basis)
- 유럽연합의 예산지원을 위한 자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그 절차에 관한 개요를 설명함

o 현재의 재원체계(The current system)
- 연간 지출을 위해 가용한 최대금액과 분야별 소요되고 있는 예산의 비율에 관한 현재 시스템을 설명함
-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예산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비판의 내용

o 수익과 지출 : 공정한 보답에 관한 논쟁(Revenue and expenditure: the debate on "juste retour")
- 각 회원국의 유럽연합 예산에 대한 기여와 보답에 대한 입장 차이를 기술함

o 의회의 개혁 촉구(Parliament's push for reform)
- 유럽연합의 재정자립을 위한 유럽의회의 연도별 제안 및 결의안 소개

o 2014~2020년 : 제한된 변화(2014-20: limited changes)
- 예산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정상회의의 입장 및 연도별 변화 사항에 대한 개요를 설명

o 고유자원에 대한 고위층그룹(High-level Group on own resources)
- 의회와 집행위원회, 그리고 정상회의 간에 예산개혁을 담당할 고위층그룹(high-level group) 설립을 위한 공동선언과 내용을 설명

[그림 2] 본회의 개관(Plenary at a glance) 보고서

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At a glance
PLENARY – 10/04/2014

Own resources of the European Union

The "own resources system" ensures the financing of EU's policies. While the European Council of February 2013 agreed only marginal changes to its current configuration, a newly established high-level group chaired by Mario Monti may possibly pave the way to deeper reforms.

Legal basis

Article 31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aims to provide the Union with financial autonomy, and establishes that **own resources** finance the budget of the EU. The Council unanimously sets the provisions governing the own resources system, on which the European Parliament (EP) is only consulted. In addition, this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requires ratification by all Member States (MS). Implementing measures for the system are also subject to a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in this case requiring the EP's consent but only a qualified majority in the Council.

The current system

The maximum amount of resources available for annual payments (own resources ceiling) is set at 1.23% of the Union's gross national income (GNI), which is an indicator of annual economic activity. In 2012, the EU budget had total revenue of €139.5 billion, divided as follows: 12% from **traditional own resources** (mainly customs duties); 11% from an own resource based on **value added tax (VAT)**; 71% from an own resource related to Member States' **GNI**; as well as 6% of **other revenue** (e.g. taxes on EU staff salaries and fines on companies for breaching competition law) not classified as "own resources".

Since the EU budget cannot run a deficit, the GNI-based resource was designed to play a budget-balancing role, but its importance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ime, and it now represents by far the largest share of the total. In addition, based on a complex statistical calculation to harmonise MS' VAT bases, the VAT resource has a very weak link to actual VAT proceeds collected in MS and is sometimes considered to be just an additional GNI resource.

Set in Council Decision (EC, EURATOM) No 2007/436, the system ensures enough resources to cover planned EU expenditure. However, it is often criticised for its opacity reflecting the successive series of agreements that MS have reached since 1970. New agreements are seen to have frequently added layers of complexity to the overall design, for example, in the form of correction mechanisms applicable only to some MS to reduce their contributions (such as the so-called UK rebate, which was introduced in 1985 and has become *de facto* permanent, since unanimity is required to modify it).

Revenue and expenditure: the debate on "*juste retour*"

Over recent decades, EU budgetary discussions have appeared to concentrate increasingly on MS' budgetary balances, i.e. the difference between what each country contributes to and receives from the EU budget. Apparently simple, the concept is in reality controversial and open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The fact that the financing of the EU budget largely depends on resources that MS perceive as national contributions that they wish to minimise is said to increase this focus on so-called "*juste retour*" (fair return). In turn, the "*juste retour*" approach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U budget as a whole, by favouring the use of expenditure instruments with geographically pre-allocated funds rather than of those with the highest EU added value, and by hindering changes in the structure of expenditure.

Parliament's push for reform

While the EP is now co-legislator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Council for the adoption of the annual budget, it has very limited influence on the revenue side. A 2007 resolution reflects the critical opinion that the EP

Author: Alessandro D'Alfonso, **Members' Research Servic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140790REV1
Disclaimer and Copyright: This note is a summary of published information and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author or the European Parliament. The document is exclusively addressed to the Members and staff of the European Parliament for their parliamentary work. Links to information sources within this document may be inaccessible from locations outside the European Parliament network. © European Union, 2014. All rights reserved.

EUROPEAN PARLIAMENT

○ 인포그래픽(Infographics) 개관 보고서

- 주제에 관한 유용한 정보나 통계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든 자료로 앞면은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도표, 지도, 그래프 등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고, 뒷면은 각 도표, 지도,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심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인포그래픽 개관 보고서 역시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2014년 6월 23일 발간된 '유럽체포영장'(European Arrest Warrant)이라는 인포그래픽 개관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4] 인포그래픽 개관(Infographic at a glance) 보고서의 구성 사례

<앞면>
o 유럽체포영장(European Arrest Warrant)의 기능 강화를 위한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 배경
o 2005~2013년 발부된 체포영장과 체포결과의 총계에 관한 그래프
o 2005~2013년 각 회원국 지도별 발부된 체포영장의 비교 그래프
o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다른 회원국에서 체포한 영국의 체포결과의 범죄별 비교 그래프

<뒷면>
o 심층정보
- 2005~2013년 발부된 체포영장과 체포결과의 총계에 관한 그래프의 의미 설명
- 데이터에서 누락된 국가와 누락년도에 대한 설명
- 지도 비교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영국의 체포결과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림 3] 인포그래픽(Infographic) 개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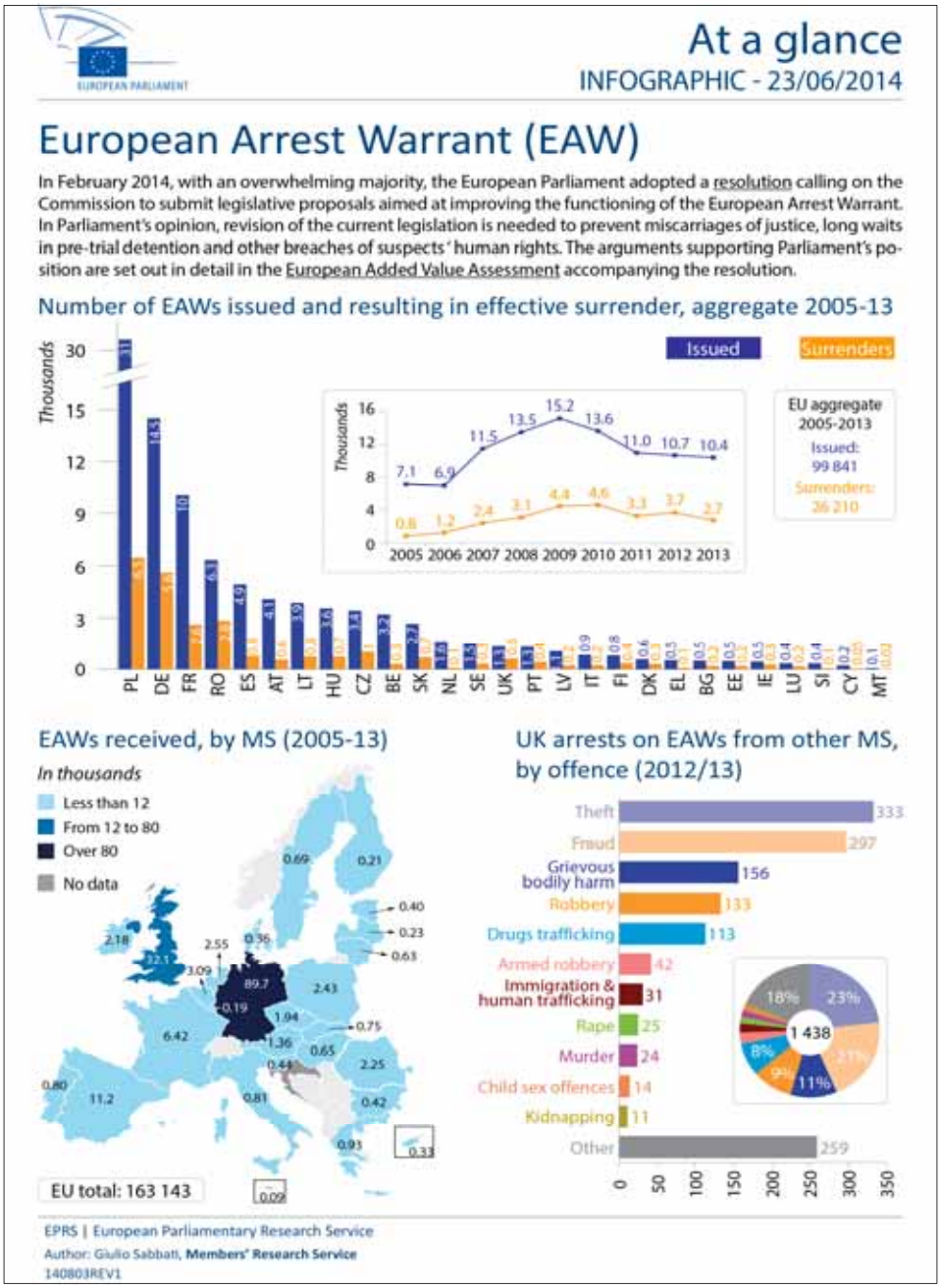

나. 브리핑(Briefing) 보고서

□ 브리핑은 3~10페이지 분량의 정책이나 주요 화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개관한 자료이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분됨

○ 브리핑(Briefing) 보고서

- 현안 정책, 이슈 또는 입법에 관한 자료
- 2014년 5월 23일 발간된 '유럽연합에서의 중국의 투자'(Chinese investment in the EU)라는 브리핑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5] 브리핑(Briefing)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요약 o 브리핑의 목차 o 용어 해설 o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의 필요성 설명 o 중국의 외국직접투자 : 동향과 정책 프레임워크 설명 - 중국의 내부정책 프레임워크의 상황 - 중국의 외국직접투자의 동향 o 중국의 외국직접투자와 유럽연합의 투자 비교 분석 - 다른 투자국과의 상황 비교 - 중점이 되는 투자분야에 대한 비교 o 중국의 외국직접투자의 잠재적 영향력에 관한 논점 분석 - 기대효과 - 잠재적 위험요인 분석 o 유럽의회의 입장과 결의안 채택 경과 및 내용 설명 o 참고자료 o 주석 o 저작권 표시

[그림 4] 브리핑(Briefing) 보고서

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Briefing
23/05/2014

Chinese investment in the EU

SUMMARY

From ports to cars to food processing,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the European Union (EU) concerns a wide variety of economy sectors. While China's FDI in the EU has grown exponentially, it still is only a small part of the total FDI into EU.

Despite the government's role in the growth of Chinese FDI since 2007, Chinese companies invest abroad in similar ways to other commercial entities. They are investing to gain market share, improve brand recognition and reputation, and find resources and assets. Chinese investors show a preference for investments in the largest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especially Germany. However, as China's global importance and economic power increases, worries about the possible economic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Chinese FDI are also intensifying.

Negotiations on an EU-Chin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were launched in 2013. EU enterprises call for such an investment agreement to ensure more reciprocity in business relationships. Several EU Member States have used different approaches to attract Chinese investment, leading to fears of a "race to the bottom". A single EU-China agreement would remove most of these issues. Chinese entrepreneurs for their part see the different Member State approaches as leading to fragmentation of markets (laws, languages), labour laws and social security, and therefore as a barrier to their effective investment in the EU.

In this briefing:

- Towards a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 Chinese FDI: trends and policy framework
- Chinese FDI and the EU
- Views on the potential impact of Chinese FDI
- European Parliament
- Main references

Author: Laine Škoba, Members' Research Servic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140512REV1
http://www.eprs.ep.parl.union.eu — http://epthinktank.eu
eprs@ep.europa.eu

EUROPEAN PARLIAMENT

○ 통계스포트라이트(Statistical Spotlights) 브리핑 보고서

- 차트, 그래프 또는 지도로 구성된 특정한 정책분야에 대한 유용한 통계의 모음
- 2014년 5월 23일 발간된 '소규모 농장'(Small Farms)이라는 통계스포트라이트 브리핑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6] 통계스포트라이트 브리핑(Briefing)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요약
o 유럽연합 지도를 통한 농장지역의 분포도
  - 지도에 대한 설명
o 회원국별 소규모 면적지역과 경제적으로 소규모 농장지역 분포도
o 지역별 경제적으로 소규모 농장 분포도
o 회원국별 소규모 농장의 경제적 산출금액 비교 그래프
o 회원국별 소규모 농장의 특산물 비교 그래프
o 유기농장과 소규모 지역 농장의 회원국별 비교 그래프
o 소규모 농장의 노동력의 회원국별 비교 그래프
o 심층정보
  - 정의
  - 유럽연합 지도를 통한 농장지역의 분포도 설명
  - 회원국별 소규모 면적지역과 경제적으로 소규모 농장지역 분포도 설명
  - 지역별 경제적으로 소규모 농장 분포도 설명
  - 회원국별 소규모 농장의 경제적 산출금액 비교 그래프 설명
  - 회원국별 소규모 농장의 특산물 비교 그래프 설명
  - 유기농장과 소규모 지역 농장의 회원국별 비교 그래프 설명
  - 소규모 농장의 노동력의 회원국별 비교 그래프 설명

[그림 5] 통계스포트라이트(Statistical Spotlight) 브리핑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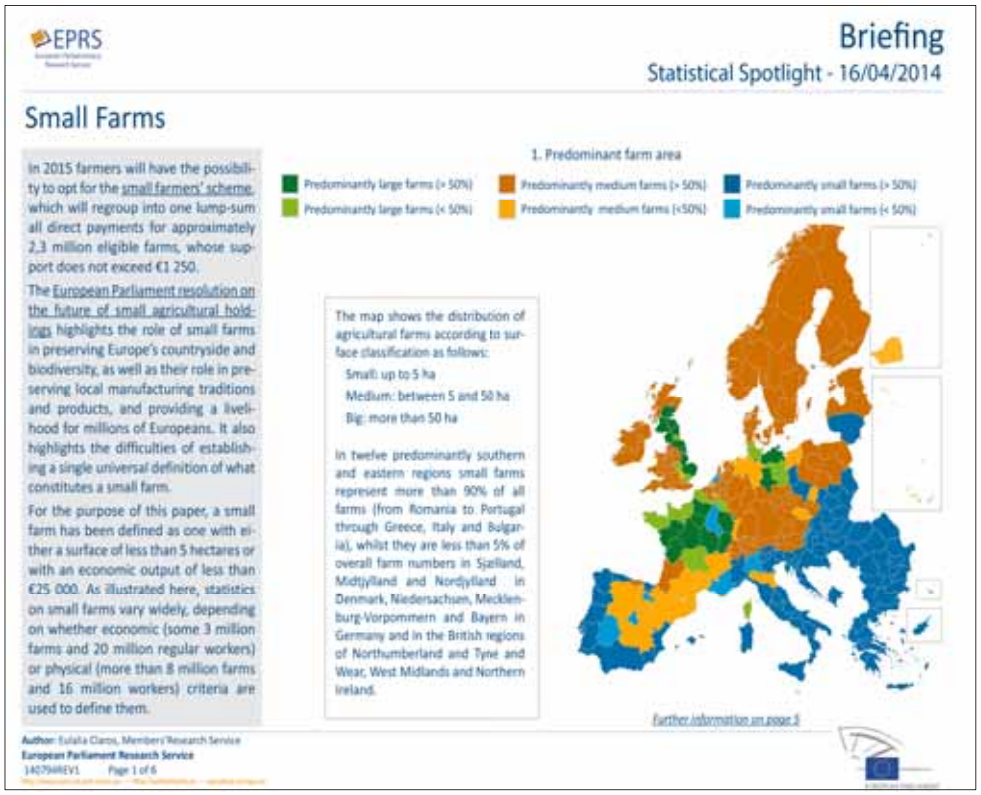

EPRS

Briefing

Statistical Spotlight - 16/04/2014

Small Farms

In 2015 farmers will have the possibility to opt for the small farmers' scheme, which will regroup into one lump-sum all direct payments for approximately 2,3 million eligible farms, whose support does not exceed €1 250.

The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future of small agricultural holdings highlights the role of small farms in preserving Europe's countryside and biodiversity, as well as their role in preserving local manufacturing traditions and products, and providing a livelihood for millions of Europeans. It also highlights the difficulties of establishing a single universal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small farm.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a small farm has been defined as one with either a surface of less than 5 hectares or with an economic output of less than €25 000. As illustrated here, statistics on small farms vary widely, depending on whether economic (some 3 million farms and 20 million regular workers) or physical (more than 8 million farms and 16 million workers) criteria are used to define them.

1. Predominant farm area

Predominantly large farms (> 50%)
Predominantly large farms (< 50%)
Predominantly medium farms (> 50%)
Predominantly medium farms (<50%)
Predominantly small farms (> 50%)
Predominantly small farms (< 50%)

The map shows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farms according to surface classification as follows:

Small: up to 5 ha
Medium: between 5 and 50 ha
Big: more than 50 ha

In twelve predominantly southern and eastern regions small farms represent more than 90% of all farms (from Romania to Portugal through Greece, Italy and Bulgaria), whilst they are less than 5% of overall farm numbers in Sjælland, Midtjylland and Nordjylland in Denmark, Niedersachsen, Mecklenburg-Vorpommern and Bayern in Germany and in the British regions of Northumberland and Tyne and Wear, West Midlands and Northern Ireland.

Further information on page 3

Author: Eulalia Claros, Members' Research Service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
140794REV1 Page 1 of 6

다. 심층분석(In-depth Analysis) 보고서와 연구(Study) 보고서

□ 이슈, 정책 또는 입법에 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로 '심층분석' 보고서는 11~36페이지 분량이고, 37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는 '연구' 보고서로 발간됨

○ 2014년 6월 2일 발간된 '유럽연합 예산 확충방안'(How the EU budget is financed)이라는 심층분석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7] 심층분석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요약
1. 서론
2. 연혁
  2.1. 1952-1969 : 초기단계
  2.2. 1970-1987 : 재원의 마련
  2.3. 1988-1999 : 들로르 개혁(Delors reforms)
  2.4. 2000년 이후 : 임시적 변화(ad hoc changes)
3. 현재의 제도
  3.1. 주요데이타
  3.2. 제도수행방안
  3.3. 균형에 관한 민감한 논쟁
4. 의회의 역할
5. 2014-20년 MFF 협정 : 재원의 제한된 변화
  5.1.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개혁안
  5.2. 개혁안에 대한 반응과 최근의 발전
6. 개혁의 대안
  6.1. 두 가지 주요 모델
  6.2. 공통분모가 되는 분야
  6.3. 교정방식
  6.4. 유럽연합 예산의 재분배효과의 타당성
7. 제도 접근의 기준과 그 구성요소
  7.1. 예산 기준
  7.2. 민주적 책임성 기준
  7.3. 경제적 기준
  7.4. 형평 기준
  7.5. 통합 기준
  7.6. 기술 및 행정 기준
8.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새로운 재원
  8.1. 새로운 VAT 재원
  8.2. FTT 재원
9. 새로운 재원 : 다른 가능한 후보군

9.1.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로부터의 수익
9.2. 항공운임 관련 요금부과
9.3. 에너지/탄소세
9.4. 유럽연합 법인소득세
9.5. 화폐주조세와 관련한 재원
9.6. 유럽연합 통신세
10. 전망
11. 참고자료
12. 부록

[그림 6] 심층분석(In-depth Analysis) 보고서

라. 통계/그래픽 발간물(Statistical/graphical products)

□ 연구발간물에 사용된 모든 그래프와 차트들은 온라인 '그래픽 웨어하우스'(Graphics Warehous)[9]에 수집되어 의원들의 자료로 사용되거나 온라인 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다운로드할 수 있음

[그림 7] 그래픽 웨어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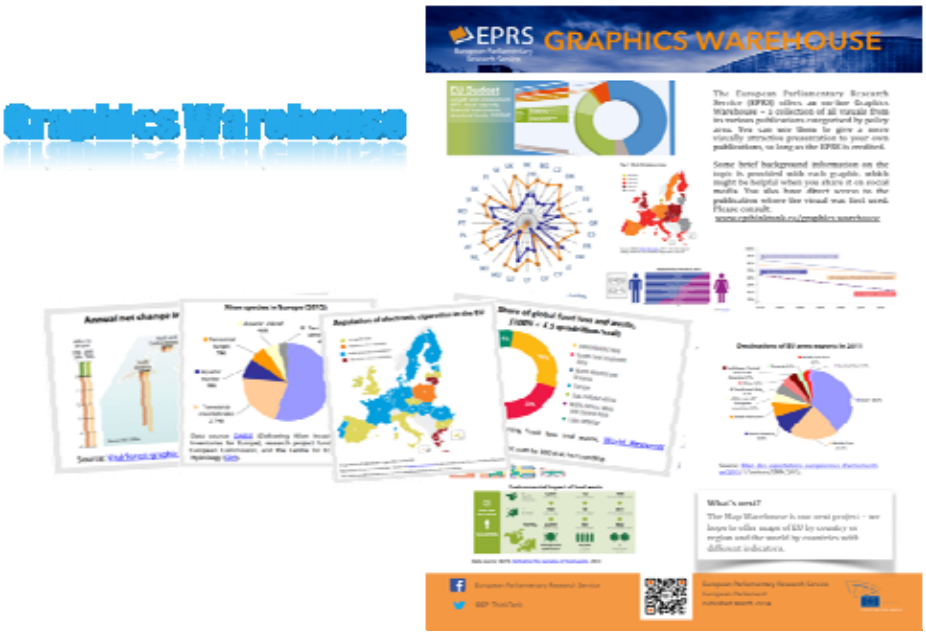

마. 팟캐스트(Podcasts)

□ 개관노트(At-a-glance notes)와 브리핑(Briefings) 보고서 중 일부 팟캐스트는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 사이트[10]에서 가용함

9) www.epthinktank.eu/graphics-warehouse 참조.
10) www.eprs.sso.ep.parl.union.eu 참조.

Ⅳ. 유럽의회조사처 도서관

1. 도서관의 조직과 기능

□ 유럽의회조사처의 도서관(Directorate for the Library : Directorate B)은 의원 개개인과 유럽의회 전체에 대하여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의회열람실(Parliament's Reading Rooms)의 운영과 별도로 대규모 문헌 및 디지털자료를 보유하면서 뉴스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함

○ 도서관은 인트라넷과 인터넷 기반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문서를 보존하고 '유럽의회 역사기록보존소'(Historical Archives)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

○ 도서관은 대민회답과 기록관리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 개최를 통해 도서관을 문화의 허브로 발전시키고 있음

□ 도서관은 다음 4개의 과(units)로 이루어짐

○ 오프라인·온라인도서관서비스과(On-site and Online Library Services Unit)

○ 역사기록보존소(Historical Archives Unit)

○ 대민회답과(Citizens' Enquiries Unit : Ask EP)

○ 문서관리과(Transparency Unit)

□ 2011년 유럽의회도서관은 의원들에게 보다 초점을 둔 '과학적 정보 서비스'(Scinetific Information Service)라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라는 요구

를 받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유럽의회조사처가 설립되면서 이 조직에 편입되었음

[그림 8] 유럽의회도서관의 신개념(2011-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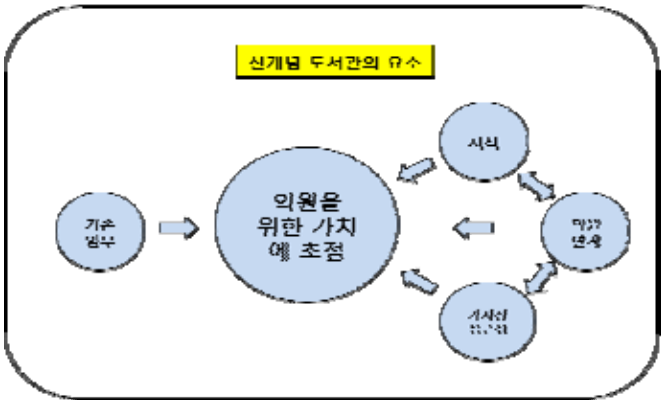

□ 그 이후 유럽의회조사처의 도서관은 고객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인트라넷에 '유럽의회조사처에 대한 질의'(Ask EP)라는 서비스를 두어 의원들이 질의를 직접 입력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

○ 웹사이트에 언론사와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의회정치에 관한 정기간행물·도서·연구물을 제공하며, 정보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함

○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도서관 브리핑(약 3,000 단어 이내), 본회의 브리핑(1페이지/번역본), 통계브리핑, 인포그래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도서관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의 접근성을 강화함

- 최상의 도서관 자료를 한 장소에서 구할 수 있는 거점으로 도서관 블로그를 운영하며, 의원 보좌진들을 위한 전문지식과 '요령과 기술'(tips & tricks) 서비스를 제공함

-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의원들의 생산물을 재사용하기 쉽도록 하며, 게시물은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 높게 만들어짐

[사진 3] 유럽의회조사처 도서관 시찰 장면

2. 도서관의 운영 방식

가. 뉴스와 정보소스에 대한 접근

□ 도서관은 유럽의회조사처 웹사이트인 www.eprs.ep.parl.union.eu를 통해 선별된 뉴스 서비스와 의원들의 업무와 연관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음

○ 뉴스

- 세계의 뉴스소스를 유럽연합 전문가에게 제공(예컨대, Reuters, AFP, Financial Times 등)

○ 데이터베이스

- 전문가 정보와 분석소스를 제공(예컨대, Factiva, Nexis, Oxford Analytica 등)

○ 알림(Alerts)

- 서적과 논문을 포함하여 화제에 관하여 다양한 소스로부터 최근 자료를 제공하는 정기적인 개인 이메일 알림

○ 그래픽 웨어하우스

- 유럽의회조사처 발간물에서 사용된 차트, 도표 등을 즉시 사용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수집물

나. 도서관 열람실(Library Reading Rooms)

□ 유럽의회조사처 도서관 열람실(EPRS Library Reading Rooms)은 유럽의회가 소재한 브뤼셀(벨기에), 스트라스부르(프랑스),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에 각각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들과 직원에게만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음

○ 브뤼셀 도서관의 개방시간

- 월 10:00~19:00, 화~목 08:30~19:00, 금 08:30~17:00

○ 스트라스부르 도서관의 개방시간

- 월 16:00~19:00, 화~수 09:00~19:00, 목 09:00~12:30

○ 룩셈부르크 도서관의 개방시간

- 월~목 09:30~17:30, 금 09:30~17:00(또는 09:30~12:30)

□ 유럽의회조사처 세미나를 포함하여 싱크탱크와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전문

가 강연 등 정기적인 이벤트가 도서관에서 행해짐

○ 이벤트에 관한 정보는 유럽의회조사처 인트라넷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함

다. 유럽의회 역사기록보존소

□ 유럽의회 역사기록보존소(Historical Archives of the European Parliament)는 1952년 창설 이래로 공식문서와 기타 기록자료를 보존하고 있음

□ 도서관의 역사기록보존소는 의회의 역사와 활동을 보존하기 위해 전임 의장들의 영상인터뷰 자료를 포함하여 역사적 연구와 논문을 발간함

□ 또한, 역사기록보존소는 유럽의회 활동과 관련한 역사적 문서와 정보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고 의원 개인의 문서들을 보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유럽의회의 의원들과 전직 의원들은 언제라도 그들이 의회 재임기간동안 종이 또는 전자형태의 문서들을 기록보존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문서들은 분석, 조직화, 디지털화, 또는 PDF 파일로 전환되어 보존됨

○ 의원들과 전직 의원들은 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음

라. 대민회답과

□ 도서관 대민회답과(Citizens' Enquiries Unit : 'Ask EP')는 유럽연합 이슈와 유럽의회에 관한 일반 대중들의 정보요청에 회답하는 부서임

□ 회답이 잘 조사·분석되고 관련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대민회답과는 유럽의회와 그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있음

○ 또한, 도서관 대민회답과는 대중들에게 정보요구, 비평, 의견을 제시하

는 채널을 제공하고, 더욱 폭넓은 정치 투명성 제고에 공헌함

○ 시민들은 유럽의회 웹사이트 www.europarl.europa.eu/askEP를 통해 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음

□ 도서관 대민회답과는 빈번한 질의에 대한 회답으로 사용되는 모범회답(model answers)과 함께 대중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온 주제들에 대한 월간목록을 발간함

○ 이 자료는 유럽의회 의원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www.epthinktank.eu/author/epanswers에서 접속할 수 있음

마. 문서에 대한 접근

□ 유럽의회는 의회가 산출하거나 보유한 서류, 특히 입법과정과 관련한 문서에 대하여 시민들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11)]

□ 도서관 문서관리과(Transparency Unit)는 의회문서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에 회답함

○ 대부분의 문서가 유럽의회문서등록소 www.europarl.europa.eu/RegistreWeb에서 전자형태로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음

바. 로비투명성 등록(Transparency Register)

□ 유럽연합의 산하기관들은 거의 모든 분야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즉 전문자문가, 회사로비스트, 무역협회, 시민

11) Regulation EC N°1049/2001.

단체, 싱크탱크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이해관계자들이 유럽연합 산하기관들과의 최근 대화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공동투명성등록소'(Joint Transparency Register)를 설립하였음

○ 이 등록소는 약 6,50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다 강화하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감독을 증가하여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예정임

□ 투명성등록소는 다음의 사항을 제공함

○ 이해관계인들의 연락정보와 정책 이해관계

○ 투명성 요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예컨대, 이벤트와 청문회 등)

○ 로비수행에 관한 가이드와 이해관계자들의 행위규범

Ⅴ.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

1.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서비스

가. 영향평가의 의의

□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란 정책제안 준비 시에 수행하는 일련의 논리적 단계를 말함[12)]

○ 영향평가는 정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가능한 정책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정책결정자들이 증거를 준비하도록 하는 과정임

○ 영향평가 시에는 다음의 질문에 답할 것이 요구됨

- 문제의 본질과 규모는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누가 가장 영향을 받는가?
-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 유럽연합이 개입해야 하는가?
- 만일 그렇다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정책대안들은 무엇인가?
- 대안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은 무엇일 것 같은가?
- 주요 대안들은 문제해결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일관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 미래의 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12)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9)92, 2009, p.4.

□ 영향평가는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정책결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님

[표 8] 영향평가 핵심분석단계 요약[13)]

1	**문제의 식별**
	· 문제의 본질과 범위를 특정한다.
	· 핵심관계자와 영향 받는 사람들을 파악한다.
	· 추진 요인과 기본적 원인을 설정한다.
	· 문제가 유럽연합의 소관인가? 필요성 및 부가가치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 필요시 민감도 분석과 위험평가를 포함한 명백한 기준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2	**목표의 정의**
	· 문제와 근본원인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운영적인 것까지 일련의 단계로 목표를 설정한다.
	· 목표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요 우선사항과 제안과 함께 기본권 측면에서 리스본 조약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등과 같이 유럽연합의 정책과 전략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3	**주요 정책대안의 개발**
	· 내용에 대한 대안과 (규제 또는 비규제 방식의) 이행방안에 대한 대안의 구별이 적절한 경우 정책대안을 파악한다.
	· 비례성의 원칙을 검토한다.
	· 기술적인 제약이나 다른 제약들을 점검하고 효과성, 효율성 및 일관성 기준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범위를 축소하기 시작한다.
	· 추후 분석을 위하여 잠재적으로 유효한 대안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13)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9)92, 2009, p.5, “Summery of key analytical steps”.

4	**대안의 영향 분석**
	· (직/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과 발생원인(인과관계)을 파악한다.
	· (유럽연합 외부인들을 포함하여)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파악한다.
	· 질적·양적·금전적 조건의 기준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양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다.
	· 행정적 부담/단순화의 이점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한다.
	· 상황변화 또는 준수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정책 선택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5	**대안의 비교**
	· 목표에 명확히 연계된 기준에 근거하여 각 대안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비교분석한다.
	·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결과와 개별적인 결과를 표시한다.
	· 영향의 범주별 또는 영향 받는 이해관계인의 대안들을 비교한다.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선호되는 대안을 파악한다.
6	**정책모니터링과 정책평가 개요 서술**
	· 발생가능한 방해요소의 주요 대상들에 대한 핵심진행지표를 파악한다.
	· 실행가능한 모니터링과 평가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나. 영향평가의 목적

□ 유럽연합에서 모든 정책 결정은 가용한 최고의 자료로 뒷받침되는 면밀한 분석에 근거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보다 나은 정책과 법을 설계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임[14)]

14) European Commission, Evaluation of the Commission's Impact Assessment System, SG-02/2006, 2007.4, p.2;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는 결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 영향평가는 입법과정에서 더 나은 정보를 통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임[15)]

○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정책이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에 긴밀히 부합하도록 광범위한 외부 이해관계인의 조언을 고려함

○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책의 일관성과 기본권 측면과 같은 조약 목표에 부합하고, 리스본 조약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같은 상위 목표에도 부합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됨

□ 또한, 영향평가는 다른 정책 대안들의 장점과 비용을 투명하게 하고 되도록 유럽연합의 개입을 단순하고 효과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제안의 질을 제고함

○ 한편, 영향평가는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보장에 도움을 주고, 제안된 실행이 왜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줌

다. 영향평가의 대상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집행위원회 발의(Commission initiatives) 중 일부인데, 유럽의회의 영향평가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를 수반해야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발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고, 매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무처장(Secretariat General),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와 관련 부처(departments concerned)들에

정책제안의 질을 향상시키고 규제환경을 진전 및 간소화시키는 것임, 박균성, 「유럽연합과 프랑스에서의 입법영향평가」,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제2호, 유럽헌법학회, 2007, p.123.

15)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9)92, 2009, p.6.

의하여 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여 실시함

□ 반면, 유럽의회조사처에서의 영향평가는 그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대해 유럽의회조사처가 간략히 평가를 수행하여 위원회에 제공하고 해당 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상세한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사전영향평가과(Ex-Ante Impact Assessmen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입법제안과 함께 실시하는 영향평가를 분석하며, 이에 대한 방법론적 장·단점을 분석한 간략한 평가서를 제공함

○ 이후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더욱 자세한 내용의 평가보고서나 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정에 대한 대안적 혹은 보완적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함

□ 일반적으로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제안들과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안들이며,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16)]

○ 집행위원회의 입법 및 사업 프로그램(Legislative and Work Programme: CLWP)에 대한 모든 입법제안

○ 집행위원회의 비입법 및 비사업 프로그램(non-CLWP)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명백히 가지는 입법제안

○ 미래정책을 규정하는 비입법 발의안[17)]

---

16)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9)92, 2009, p.6.

17) 여기에는 백서, 실행계획, 세출프로그램, 국제협정에 대한 협상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됨.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행조치[18)]

□ 영향평가 시에는 분석의 적정한 범위와 수준을 초기 단계에 설정하여야 함

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와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의 차이

□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는 법규가 아니라 대부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안되어 실시되고 있음[19)]

□ 영향평가의 개념과 세부절차에 관한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에서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20)]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크게 1) 영향평가의 기초와 절차, 2) 영향평가의 핵심분석단계, 3)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향평가의 기초와 절차' 부분에서는 영향평가의 개념, 영향평가의 절차, 영향평가의 범위와 수준의 정의, 정보수집과 이해관계인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영향평가의 핵심분석단계' 부분에서는 문제, 정책목표, 정책대안,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 대안의 비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선

18) 이 조치는 주로 집행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사항('comitology' items) 들이 포함됨.

19) 박영도·안선경,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EU의 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p.23.

20) 이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영향평가의 절차, 방법, 일정, 영향평가보고서의 형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2005년 6월 15일 제정한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2009년 1월 15일에 개정한 문서임.

별하여 실시하지만, 유럽의회조사처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의 영향평가와 유럽의회조사처에서의 영향평가는 업무의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2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는 입법과정의 초기에 실시되지만,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입법과정 중간에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사용하지만 유럽의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논의 중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또한,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관한 해당국과의 논의 과정과 내용 등 전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함

○ 한편,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영향평가한 내용에 대한 검정작업도 실시하고 있음

2.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조직과 기능

□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Impact Assessment and European Added Value : Directorate C)은 2012년 1월에 유럽의회사무처 조직으로 창설되었다가, 2013년 11월 유럽의회조사처 산하로 편입

21) 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장 Mr. Anthony Teasdale과의 인터뷰 내용.

된 부서임[22)]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서비스는 유럽의회 위원회가 입법과정과 정책결정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유럽연합 입법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를 통하여 유럽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서비스는 모든 입법과정에서 유럽의회 위원회의 입법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23)]

○ 지원의 시점은 입법의 사전 기획단계나 안건의 준비단계, 법률안 통과단계, 또는 일단 통과된 법률의 적용이나 평가단계 등 언제나 가능함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정책형성과 개발에 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럽의회의 입법과정의 전반

22)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는 모두 2009년 영향평가가이드라인(곧 개정될 예정임)을 활용하는데, 업무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차이가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는 입법 및 정책의 논의 초기 단계에서 관여하지만,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그 과정의 중간에 개입하여 의회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결정하는 내용을 모두 평가함. 영향평가의 시기의 경우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일단 제안을 하면, 유럽의회조사처는 그 과정에서 해당국과 논의한 내용 등 모든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함(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과의 인터뷰 내용).

23)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입법이나 정책의 최종결정이 아니라, 의원들과 위원회가 그들의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과의 인터뷰 내용).

적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 서비스는 정책의 전 분야에 걸친 조사·분석의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필요시 외부의 전문인력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24)]

□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은 다음 6개의 과(units)로 이루어짐[25)]

○ 사전영향평가과(Ex-Ante Impact Assessment Unit)

○ 사후영향평가과(Ex-Post Impact Assessment Unit)

○ 유럽부가가치평가과(European Added Value Unit)

○ 과학기술옵션평가과(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Unit : STOA)

○ 유럽정상회의감독과(European Council Oversight Unit)

○ 정책수행평가과(Policy Performance Appraisal Unit)

24) 영향평가 시 외부자문은 유럽의회조사처가 개별적으로 외부의 자문을 의뢰하지 않고 유럽의회의 명의로 자문을 받고 있으며, Euro Voice라는 웹사이트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외부 자문내용을 검색할 수 있음(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과의 인터뷰 내용).

25)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이 전공 분야별이 아니라 기능별로 구분된 이유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분야별 접근이 아닌 기능별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 부서에서의 인력은 모든 정책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고도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과의 인터뷰 내용).

3.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운영 방식

□ 사전영향평가과(Ex-Ante Impact Assessment Unit)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함[26)]

○ 의회에 제출된 모든 위원회 법률안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최초의 영향평가

○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의 품질과 독자성에 관한 상세한 평가

○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제안에 대한 대안적 영향평가

○ 유럽의회 위원회가 긴급성을 요구하는 실체법 개정에 관한 영향평가

□ 사후영향평가과(Ex-Post Impact Assessment Unit)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함

○ 위원회와 유럽연합 집행기구들이 유럽법의 국내법 수용과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의 능력을 강화함

○ 유럽입법의 국내법 수용과 이행, 영향, 적용과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

26)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영향평가 또는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는 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전히 사실성에만 근거한 자료를 작성한다고 답변함. 또한, 보고서의 내용이 출판되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반대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함(2014년 6월 20일 현장 방문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장 Mr. Joseph Dunne과의 인터뷰 내용).

정한 감시기능으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함

○ 위원회의 다양한 연구 및 활동보고서를 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입법,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회의 내부적 평가도 분석함

○ 현존하는 유럽연합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함

○ 특히, 위원회가 자체 입법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원회 이행 평가서를 제공함

□ 유럽부가가치평가과(European Added Value Unit)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함

○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동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비용에 대한 '비유럽비용보고서'(Cost of Non-Europe Reports)를 발간함

-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동행동을 취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분석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보고서임

○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유럽의회 의원의 입법제안에 대하여 입법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유럽부가가치평가'(European Added Value Assessment)를 실시함

○ 긴급한 입법이 필요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면적인 유럽부가가치평가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위원회가 아직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체적인 판단으로 유럽부가가치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유럽부가가치평가'(European Added Value Appraisals)와 '현안보고서'(Issue Papers)를 간략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함

○ 유럽의회가 이미 제기한 입법제안과 정치업무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특정연구'(Specific Research)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유럽연합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유럽부가가치를 평가함

□ 과학기술옵션평가과(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Unit : STOA)는 과학과 기술 분야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함

○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그리고 과학적으로 중립적인 연구를 수행함

○ 중장기 전략적 정책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함

○ 정치인, 과학자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포럼을 조직함

○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의회의 기술평가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조율함

○ 이 서비스는 15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STOA 패널'의 지도 하에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이 분야의 발전에 관한 워크샵을 실시함

□ 유럽정상회의감독과(European Council Oversight Unit)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함

○ 다양한 법적 책무 또는 회원국 상호간의 합의에 근거한 다양한 책무를 포함하여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 결론의 이행사항과 관련한 유럽정상회의 입장을 모니터하고 분석함

○ 유럽정상회의감독과는 유럽정상회의 결론의 확정사항이나 책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유럽정상회의의 성과의 정도에 대한 일상적인 브리핑 노트를 제공하며, 이 분야의 상세한 연구업무를 수행함

□ 정책수행평가과(Policy Performance Appraisal Unit)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함

○ 정책수행평가과는 법률안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이 유럽집행위원회의 연간예정사항에 포함될 때마다 그 법안의 실질적인 작동에 대한 초기평가를 수행함

○ 이 초기평가는 문제가 되는 새로운 입법제안의 심사 이전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됨

4.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의 발간물

가. 개관(At-a-glance) 보고서

□ 한 주제에 관한 신속한 개관을 제공하는 1~2페이지 노트로 '유럽부가가치평가'(European Added Value in Action) 개관 보고서와 '이행평가'(Implementation in Action) 개관 보고서가 있음

○ 유럽부가가치평가 개관 보고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배경'과 '유럽경제의 이익'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014년 7월 발간된 '핸드폰 로밍 비용청구에 관한 유럽연합 정책의 부가가치'(The Added Value of EU Policy on Mobile telephone roaming charges)라는 유럽부가가치평가 개관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림 9] 유럽부가가치평가 개관 보고서

At a Glance *European Added Value in Action*

The Added Value of EU policy on
Mobile telephone roaming charges

Background

International roaming allows a customer of a mobile network operator in one country to obtain telephone services - whether voice, SMS or data - from an operator in another country. The service provider ensures that the consumer remains connected to a mobile network abroad whilst using the same mobile phone handset - or a laptop/tablet in case of data roaming - and the same telephone number as at home.

In the era before the emergence of an EU-level policy to increase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the European market in this field was largely dominated by a **limited number of traditional players**, often public-sector monopolies, and was characterised by a marked **lack of regulatory coherence** between member states. Telephone networks across Europe were **limited to national boundaries**, preventing effective competition. The cost of telephone calls was generally high - and mobile-phone roaming charges were especially high, to a degree strikingly unjustified by the actual cost incurred by the service provider. Such charges were, on average, three times as high as those for domestic phone calls.

With the initial liberalisation of the Europ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sector in 1998, EU action was taken to **increase competition** between operators and to promote adoption of common GSM and UMTS standards. A gradual fall in prices followed, and innovative new products and services began to appear. Almost a decade later, in 2007, the EU institutions introduced specific **caps on mobile roaming charges** for the first time, and since then - in 2009, 2012 and 2013 - they have adopted further revisions, with the aim of cutting such charges further. The EU roaming regime applies in the 28 member states of the Union, together with the three other countries within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The European Parliament has played a very significant role in both initiating and then in shaping EU legislation on roaming charges, in direct response to citizens' concerns about excessive costs. In April 2014, the Parliament voted to end roaming charges by 15 December 2015, as part of the 'Connected Continent' package of measures which are currently being considered to promote a digital single market in Europe. The outcome of the legislative negotiation with the Council of Ministers is awaited.

Benefits to the European economy

The benefit to the consumer of the **fall in roaming charges** can be seen in the following striking figures, with the charges for intra-EU mobile phone calls and data communication progressively converging on domestic charges (as the Commission believes they should by 2015):

- the cost of phone calls per minute has fallen from 1.63 euro in 1998 to 43 cents in 2009 and to 19 cents in 2014.
- the cost of phone calls received per minute has fallen from 19 cents in 2009 to five cents in 2014.
- the cost of sending text messages has fallen from 11 cents in 2009 to six cents in 2014, and they are now free to receive.
- the cost of communicating a megabyte of data has fallen hugely, from four euro in 2009 to 20 cents in 2014, whilst the average cost of sending a single email has fallen from 98 cents to six cents.

EPRS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Author: Eva Casalprim – July 2014
European Added Value Unit, Directorate for Impact Assessment and European Added Value
PE 494.465 - ISBN 978-92-823-5907-5 - DOI 10.2861/51361 - Cat. QA-04-14-702-EN-N

[표 9] 유럽부가가치평가 개관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배경 - 유럽연합의 통신시장 정책과 유럽의회의 역할의 중요성 o 유럽경제의 이익 - 정책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연도별 이익과 휴대폰 로밍시장 규모 변화 - 유럽연합의 규제의 간소화 및 행정부담 감소

[그림 10] 이행평가 개관 보고서

EUROPEAN PARLIAMENT

At a Glance
Implementation in Action
June 2014

Update on the European Commission's REFIT Programme

Background

In December 2012, the European Commission's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 (REFIT) committed the institution to attempt to establish a simple, clear, stable and predict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business, workers and citizens, as well as to ensure EU legislation brings benefits at the lowest cost and with the least bureaucracy (COM(2012)746). The Commission undertook a process of screening all EU legislation for unnecessary burdens and weaknesses, seeking to identify corrective solutions (SWD(2013)401 final). As a result of this initial screening, in October 2013, the Commission proposed 133 individual actions to simplify legislation, cut red tape and repeal redundant laws (COM(2013)685 final). In addition, following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Commission committed to 47 'Fitness Checks' and evaluations to assess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U regulations (SWD(2013)60 and COM(2013)446 final).

New Commission Communication

The Commission has recently produced a Communication on the state-of-play in implementing the REFIT programme and identifies new actions to take (COM (2014)368 final). It is accompanied by the first edition of a REFIT Scoreboard to track progress on the 133 individual actions identified so far by the Commission[1] (see the Staff Working Document SWD(2014)192 final). This first Scoreboard provides a full list of the identified measures to be monitored according to the initial REFIT estimations, featuring the Commission's analysis about whether, how, and to what degree expected results may have been jeopardised by amendments made to the relevant initiative during the co-decision procedure.

However, the Scoreboard does not present REFIT's implementation in a format consolidating available data into statistics, as is the case for the Internal Market or the Consumer Scoreboards. Nor does it propose an overall REFIT "implementation deficit" indicator, such as the Internal Market Scoreboard's established "transposition deficit" indicator, featuring a breakdown by Member State and policy area. Also, the structure does not readily allow comparison of progress made in different areas. However, the Commission's assurance is that the 2015 Scoreboard wi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act on-the-ground, allowing results to be measured against initial objectives.

The REFIT process so far

This Communication runs through the main pieces of legislation adopted since the REFIT Communication of October 2013, quoting the initial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estimates. In particular, it identifies *inter alia*: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which according to Commission estimates is set to deliver annually between 5% and 20%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s, equivalent to at least €100 billion, through the roll out of electronic procurement online or 'eProcurement', as well as savings to businesses' procurement costs of €169 million, especially relevant to SMEs, through the use of self-declarations, equivalent to an 80%

[1] The Scoreboard also covers actions relating to the top 10 burdens on SMEs (see also the EP Resolution of 17th April 2014) and the Administrative Barriers Reduction (ABR+) programme.

EPRS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Author: Stephane Reynolds
Ex-Post Impact Assessment Unit
European Parliament
PE 536.332

나. 브리핑(Briefings) 보고서

□ 3~10페이지 분량의 정책이나 화제를 개관하는 보고서로 '유럽집행위원회영향평가의 초기 검정'(Initial Appraisals of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보고서와 'STOA 옵션 브리프'(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Options Brief) 보고서가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초기 검정' 보고서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입법제안에 수반하는 영향평가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첫 번째로 분석하는 노트임

○ 'STOA 옵션 브리프' 보고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연구들에 대한 요약보고서임

○ 2014년 1월 발간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의 가능성과 영향'(Potential and Impact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Social Network Sites)이라는 STOA 옵션 브리프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10] STOA 옵션 브리프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프로젝트의 개요 o 시장과 산업의 전망 o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 o 정책대안 - 주제 I : 보안의 상품화(대안 1 ~ 4 제시) - 주제 II : 프라이버시의 지역 이익화(대안 5 ~ 7 제시) - 주제 III : 디지털 비즈니스와 생활을 위한 신뢰환경 구축(대안 9 ~ 12 제시) - 주제 IV : ICT 산업을 위한 친환경시스템 구축(대안 13 ~ 15 제시)

[그림 11] STOA 옵션 브리프 보고서

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OPTIONS BRIEF No 2014-01, January 2014

STOA

Potential and Impact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Social Network Sites

About the project

Cloud Computing and Social Network Sites (SNS) are among the most controversially discussed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The opportunities of using powerful computing resources on demand via the web are considered as a possible driver for the growth of the European economy. This project:

- reviewed the latest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 identified driving factors and barriers in Europe,
- identified the main actors and their respective interests,
- analysed the impacts on citizens, business (including the IT industry itself) and public administrations, and
- evaluated the effect of a broad range of technical, economic, cultural, legal, regulatory issues and their impacts.

Cloud Computing includes a variety of technical concepts that alter computing infrastructures used by businesses, public administrations and end-users. SNS represent a prominent phenomenon grounding on Cloud Computing with a wide array of services and applications mainly focussed on end-users.

Market and industry perspectives

While the market for SNS already experienced a consolidation, the market for Cloud Computing is still in an early stage, but with considerable growth rates. It is obvious that most of the major players are still of US origin. While the lagging behind might be not as big as sometimes feared, it seem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ophistication of usage between Europe and the US. Overall it can be stated that both technologies are still evolving and that in particular the market for Cloud Computing is still in the flux. Cost savings a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positive impact for businesses and public administrations, most numbers are based on expectations than on real world experiences though. Flexibility, mobility and innovation as further positive impacts will gain of importance in the mid and long term. Negative impacts are risks for security, dependencies on services and the reliability of services. Regarding the IT industry, Cloud Computing impacts rather the market structure than the industry structure at the moment. However, both enable new services and thereby new business models. Regarding consumers, the main positive impact is convenience; costs are less relevant. Negative impacts are primarily threats to security and privacy. Based on the cost savings and the resulting productivity gains, the creation of new jobs and economic growth are seen as main positive impacts for the society and the economy at large. Recent research shows, however, that productivity gains based on IT do not lead to growth and employment automatically. This requires the presence of certain framework conditions. Negative impacts are loss of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possibly restrictions of civil liberties. Based on this, challenges were analysed further. Beside technological challenges such as standardisation and interoperability, IT security is challenged.

Privacy and Security challenges

The recent massive surveillances actions and the rise of cyber crime showed the need for a more secure basis of future computing. Cloud Computing as well as SNS challenge the existing data protection regime. However, modernisations such as the new draft regulation need to be continued and filled with life. Since trust is a pivotal success factor the questions of third party access and data retention need to be addressed. The analysis of

1 PE 513.546

다. 심층분석(In-depth Analysis) 보고서와 연구(Study) 보고서

□ 이슈, 정책 또는 입법에 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로 '심층분석' 보고서는 11~36페이지 분량이고, 37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는 '연구' 보고서로 발간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세부 검정'(Detailed Appraisals of Commission Impact Assessments)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입법과정에 수반하는 영향평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보고서임

○ '대안·보완영향평가'(Alternative or Complementary Impact Assessment)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안 부분에 대한 분석보고서임

○ '유럽의회개정법률안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of EP Amendments) 보고서는 유럽의회에서 논의되는 하나 이상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영향평가보고서임

○ '비유럽비용보고서'(Cost of Non-Europe Reports)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공동행위를 통해 더 나은 효율성이나 공동선에 관한 정책분야에 대한 분석보고서임

○ '유럽부가가치평가'(European Added Value Assessments) 보고서는 유럽의회 위원회에 의해 제안되는 법률안 발의를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분석보고서임

○ 이러한 보고서 중에서 2014년 4월 발간된 '유럽연합과 미국간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EU-U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이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세부 검정'(Detailed

Appraisals of Commission Impact Assessments) 연구 보고서의 구성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표 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세부 검정 보고서의 구성 사례

o 개요 o 서론 제1장 EU-US 영향평가의 의미와 방법 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와 가이드라인 : 일반적 평가 II. EU-US 대서양 무역 및 투자관계에 적용된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델링 1. 일반적 CGE 모델링 2.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 영향평가를 위한 CGE 모델링 3.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 영향평가에서의 CGE 모델링 방안 4. CGE 모델링에서 고용과 공공조달의 역할 5. CGE 모델링의 대안들 제2장 영향평가를 위한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의 양식화 I. 경제분석을 위한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쉽 양식화 II. 비관세수단의 수량화 방안 III. 부작용 제3장 기타 자유무역협정과의 비교 및 모델링의 근거 I. EU-US와 유사협정 : 경제적 모델링의 지속성 여부 II. 데이터 세트(dataset)와 경제적 결과 III. 비관세수단 : 이론과 지표 설정 IV. CGE 모델 양식화를 위한 시나리오 제4장 EU-US 연구와의 비교 I. 관련연구(Satellite studies) II. 대안연구(Alternative studies) o 결론 o 참고문헌 부록 I.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보고서의 주요 결과 부록 II. CGE 모델링의 연장 가능성 부록 III.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평가의 주요 결과

[그림 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영향평가의 세부 검정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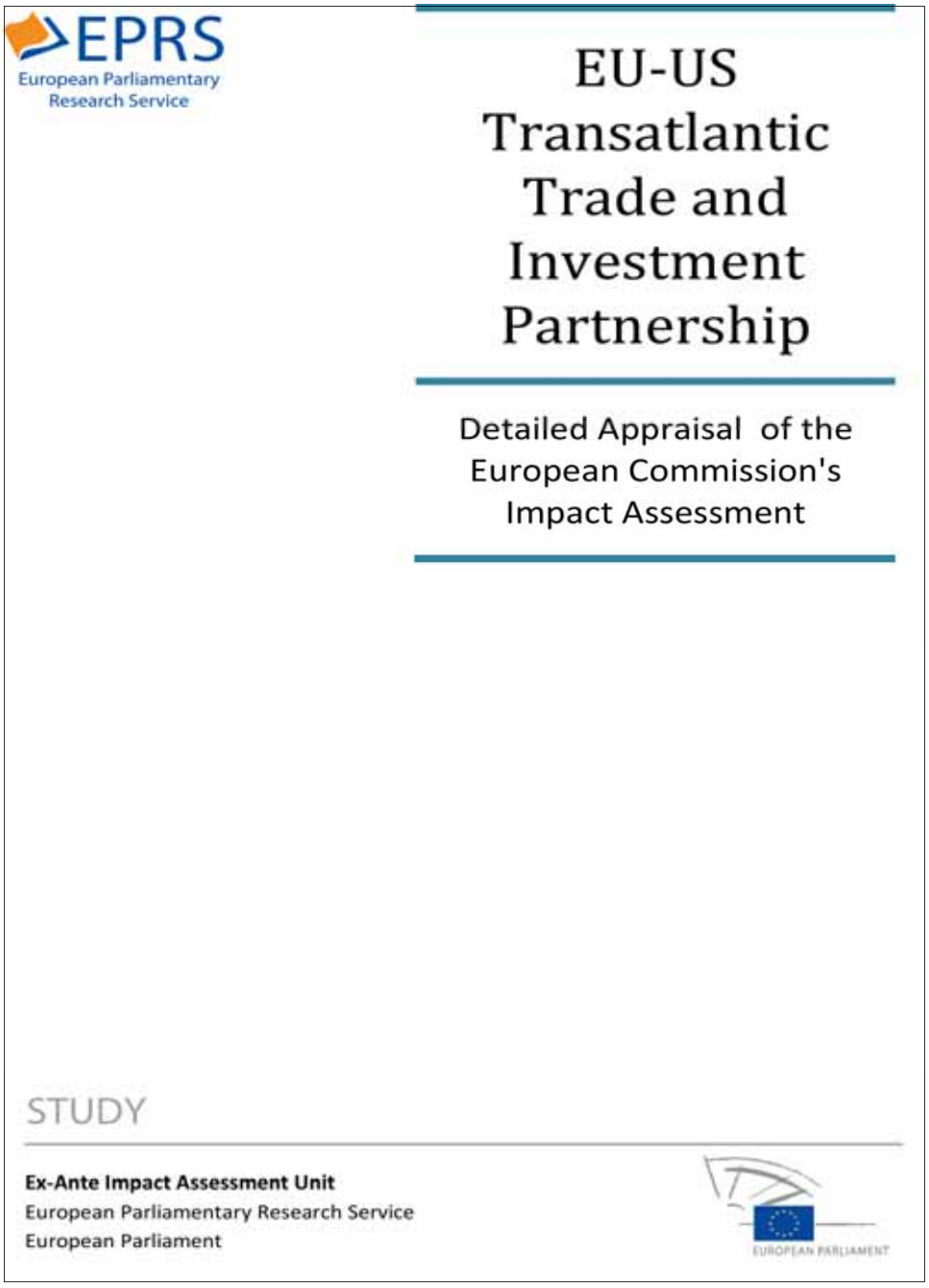

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U-U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Detailed Appraisal of the European Commission's Impact Assessment

STUDY

Ex-Ante Impact Assessment Unit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Ⅵ.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의 시사점

1. 입법홍수 시대에 좋은 법률 만들기: 통합적 입법지원체계 필요

□ 유럽의회가 2013년 11월 유럽의회조사처를 신설한 배경은 유럽연합과 관련된 정책이슈에 대한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권위있는 조사분석을 개별 의원들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유럽연합 정책 사이클 전 과정을 통하여 유럽집행위원회와 여타 집행기구들을 감독하기 위한 실질적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 이를 통하여 유럽의회가 입법의 전 과정(의제설정→집행위원회 법안발의→전문가 자문→유럽의회의 법안 심의 및 의결→국가 단위에서의 이행→실행단계에서의 감독)에서 의회가 더 좋은 입법을 하고, 집행부와 각국의 이행단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유럽의회조사처는 조직설립의 기획단계에서 통합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그 기본개념과 핵심철학을 분명히 제시하였음

○ 유럽의회조사처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의제설정 과정에 '비유럽비용 보고서'(Cost of Non-Europe Reports) 등을 발간하여 유럽연합의 의제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함

○ 나아가 전문가 자문단계와 법안 심의 및 의결 단계에서 사전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의원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법안과 정책이 완성된 이후에는 집행기구 및 각국의 이행기구에서의 이

행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활동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회의 광범위한 조사 및 분석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원연구서비스, 도서관, 영향평가서비스를 통합하여 단일한 서비스의 형태로 체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입법지원기구가 의원들의 요구에 기초한 사실적 정보와 분석적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입법과 정책의 영향평가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입법조사처가 유럽의회조사처의 '의원연구서비스실'(Directorate for the Members' Research Service)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특히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발의법안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의원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법안이 사회총후생을 늘리고, 공공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할 것임

□ 다음으로 법률안 심의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평가하여 각각의 대안이 갖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상임위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확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한국 국회에서는 입법과정에 각급기구가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전문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간 협력강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입법조사처와 도서관 간의 기능적 협력방안의 모색과 함께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간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영향평가의 도입과 통합적 운용방안 모색

□ 유럽연합이 2011년 7월에 유럽의회에 영향평가 및 유럽부가가치평가실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인식하에 유럽의회 위원회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정량화하고, 정당화하기(identify, quantify and justify political initiatives of the Committees) 위한 것임

○ 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것은 2001년 11월 발간된 '규제개선을 위한 만델케른 보고서(Mandelkern Group on Better Regulation Final Report)로 거슬러 올라감

○ 이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좋은 입법 만들기 차원에서 다양한 차원의 영향평가 도입 논의를 제기하였고, 2002년 6월에 유럽위원회 위원단에 의해 채택되었음[27)]

○ 2003년에는 새로운 영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2005년에는 기존의 평가방법을 통합하여 6단계 절차로 통합한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 이를 개정하여 통합적 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였음

○ 이후 2009년 리스본조약이 체결되면서 공동 입법권자로서의 의회의 권

27) Criag Robertson,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한국법제연구원, 2008, p.19.

한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차원의 영향평가 도입논의가 이루어게 됨

○ 기존에는 유럽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영향평가를 유럽의회에서도 도입하게 된 것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의 선택(informed choice)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영향분석 구조가 필요하다는 니에블러 보고서(Niebler report)에 근거한 유럽의회의 결의에 기초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홍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의 입법지원 기능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기능일 것임

○ 영향평가는 정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가능한 정책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최종판단을 도울 수 있고, 상임위원회의 활동 지원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는 연구자에 따라 '입법영향평가', '입법평가', '입법영향분석' 등으로 그 용어가 혼용되어 오고 있으나, 그 연구의 결과가 실제 의회활동에 접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28)]

28) 김상만, 『유럽연합(EU)의 입법영향분석제도와 모범사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3.11.30., p.8에서는 연구자별 용어 사용의 예와 정의를 소개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영향평가의 개념이 오직 '입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예산, 결산, 결의안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의 도구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용어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를 사용하되 사전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 국정과제이행평가, 규제영향평가, 과학기술영향평가 등 그 기능별 접근과 함께 각 기능별 접근에서의 분야별 접근을 통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향평가는 크게 개발영향평가와 입법영향평가로 구분될 수 있음. 다음의 [표 13]은 영향평가제도의 종류와 그 근거법령을 제시하고 있음

[표 12] 영향평가제도의 종류와 근거법령[29)]

구분	영향평가제도	근거법령
개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인구영향평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법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행정규제기본법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법
	성별영향평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갈등영향평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기본법

○ 정부의 경우에는 부처별 영향평가-총괄담당기관(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

29) 최유진, 『입법과정상의 영향평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KIPA) 연구보고서 2011-05, 2011, pp.29-30 참조 필자 작성.

익위원회, 여성부) 검토라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합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정부제출법률안이나 시행 예정 정책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늘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하여 부문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발의법률안의 양적 팽창에 따른 인력의 부족과 전문적 평가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심도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따라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기존의 부문별 평가보다 대폭 확대시행 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는 유럽연합에서 당초 집행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시작하여 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유럽의회에서도 영향평가가 도입되는 것과 유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에서 국회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30)]

○ 이 법안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법안을 심사할 때 상임위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의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와 함께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결정

30) 이한구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1906793, 발의일자: 2013-09-11).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과학기술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31]과 '국회과학기술처법안'[32]이 발의된 바 있음

□ 이처럼 우리 국회에서도 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유럽의회에서의 영향평가 도입논의 등장 배경과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유럽연합에서도 2001년 만델케른 보고서에서 규제의 증가에 따른 좋은 법률 만들기의 일환으로 영향평가 도입논의가 시작되었음

○ 유럽의회에서 영향평가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영향평가(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를 도입한 것도 의원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여 의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봄으로써 각종 정책결정 및 예산배분 과정에 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서 기인함

□ 영향평가가 정착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마련, 평가방법의 과학화와 구체화 등 충분한 시행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임

○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모델은 향후 입법지원조직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국회도 선도적으로 영향평가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1) 최원식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1911194, 발의일자: 2014-07-16).
32) 최원식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1911193, 발의일자: 2014-07-16).

3. 법률 집행과정의 국회 감독 강화

□ 유럽의회의 영향평가 기능 중 사후평가는 주로 의원들이나 위원회가 유럽연합의 법률이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이행되고 집행되는 과정과 유럽연합 법률과 정책이 이행단계에서 나타나는 영향, 운영, 효과성, 전달체계 등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돕는 데에 있음

○ 이는 유럽연합의 집행부와 각국의 이행 및 운영체계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에 기여하게 됨

□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사후적 감독기능이 약한 실정임

○ 예컨대, 복지예산의 증대로 늘어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감독도 취약한 상황임

□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법적·사회보장법적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자 중에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이 높다고 인정된 4개 직종(보험모집인, 레미콘문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산재보험제도를 당연 적용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시행 4년이 지난 시점

에서 그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험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33] 이에 따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의약품 거래에서 관행화된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쌍벌제'의 입법영향을 분석하여 그 기여효과를 확인하고, 취약분야에서의 제도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34]

○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처럼 하나의 법률과 제도는 제·개정 과정의 사회적 합의 도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집행결과 의도한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의회의 입법권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 제98조의 2에 의하면 행정입법은 제·개정 후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행정 입법 중에서 국회에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35]

○ 또한, 행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행정입법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

33) 김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70호, 2012.

34) 김주경,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항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81호, 2012.

35) 이현출, 「국회와 행정부」,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의회정치연구회, 2010, pp.298-299.

○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행정입법을 제출할 때 개정문 외에 간단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만 제출하고 있고, 법규명령 외의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개정문만 제출하는 등 행정입법의 실체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에 대한 사후평가를 체계화하여 의원 및 위원회에서 사후적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4. 입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 유럽의회조사처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음

○ 의원연구서비스실은 유럽연합 기능의 모든 영역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는 명료하며 읽기쉬운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되며, 전달방식은 서면, 대면보고,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제공에 주력하고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의 주된 범주는 다음과 같음

- At a glance: 1-2 페이지
- Briefings: 3-10 페이지
- In-depth Analyses: 11-36 페이지
- Studies: 37페이지 이상
- Fact-sheets: 다양한 분량

○ 다양한 보고서의 범주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스 등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나 통계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보고서의 가독성을 크게 높이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 의원들은 유럽연합조사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단일창구로서의 '의원 핫라인'을 이용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의원들의 질의 요구가 3시간 이내에 담당 전문가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연구발간물에 사용된 모든 그래프와 챠트들은 온라인 '그래픽 웨어하우스(Graphics Warehouse)'에 수집되어 의원들의 자료로 활용되거나 온라인 작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국회도 향후 의원의 조사회답 서비스에 대한 서면보고뿐만 아니라 대면보고를 확대하여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사회답과 각종 보고서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인트라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끝으로 입법조사처 등에서 조사회답이나 보고서 등의 작성 과정에 활용된 다양한 그래프와 챠트가 의원들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픽 웨어하우스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Ⅶ. 결론

□ 이 보고서는 2013년 11월에 공식 발족한 유럽의회조사처를 방문하여 조직특성과 주목을 끄는 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내용과 그 시사점을 분석한 것임

□ 유럽의회조사처는 세계 선진입법지원기구의 장·단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의 도서관 기능과 사무처에 속해온 영향평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의원연구서비스실을 추가하여 하나의 통합된 입법지원기구로 발족하였음

○ 유럽의회는 2009년 리스본 조약 체결이후 유럽집행위원와와 함께 공동입법권자로서의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기능강화가 모색되었으며 그 흐름의 일환으로 의원연구서비스실을 신설하고, 영향분석기능을 강화하여 유럽의회조사처에 포함하게 됨 것임

□ 유럽의회조사처는 기존의 입법지원기구의 기능이 도서관의 참고봉사 서비스와 조사분석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온 것이 특징적임

○ 그동안 유럽연합에서는 주요한 법안제안권자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주로 실시되어 왔으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강화 차원에서 유럽의회에서도 도입되게 된 것임

○ 영향평가는 정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 가능한 정책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최종판단을 도울 수 있고, 상임위원회의 활동 지원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 서비스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조사처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임

○ 다양한 보고서의 범주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나 통계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보고서의 가독성을 크게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는 가장 최근에 탄생한 조직으로서 우리 국회의 입법지원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유럽의회조사처는 입법의 전 과정(의제설정→집행위원회 법안발의→전문가 자문→유럽의회의 법안 심의 및 의결→국가 단위에서의 이행→실행단계에서의 감독)에서 의회가 더 좋은 입법을 하고, 집행부와 각국의 이행단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적 조직 모델을 취하고 있음

○ 우리 국회의 경우 입법지원기구가 순차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 스텝, 도서관, 입법조사처 등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입법 전과정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다음으로 입법홍수 시대에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영향평가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 영향평가가 정착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마련, 평가방법의 과학화와 구체화 등 충분한 시행 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임

□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 모델은 향후 입법지원조직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국회도 선도적으로 영향평가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럽의회조사처의 기능 중 두드러진 것은 입법 이후의 사후통제가 영향평가를 통하여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

○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사후적 감독기능이 약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요청된다고 할 것임

[사진 4] 유럽의회조사처 임원진과의 기념촬영

참고문헌

김상만, 『유럽연합(EU)의 입법영향분석제도와 모범사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3.11.30.

김주경,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항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81호, 2012.

김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70호, 2012.

박균성, 「유럽연합과 프랑스에서의 입법영향평가」,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제2호, 유럽헌법학회, 2007.

박영도·안선경,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EU의 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윤계형,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이현출, 「국회와 행정부」,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의회정치연구회, 2010

최유진, 『입법과정상의 영향평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1-05, 한국행정연구원, 2011.

Criag Robertson,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한국법제연구원, 2008.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SEC(2009)92, 2009.

European Council, Inter-Institutional Common Approach for Impact Assessment, Council Doc. 14901/05 of 14.11.05.

European Commission, Evaluation of the Commission's Impact Assessment System, SG-02/2006, 2007.4

European Parliament, Adoption of Rules on the operation of the Members' Research Service, Note to Members of the Bureau, D(2014) 27021.

European Parliament,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Bureau decision of 20 May 2013 to establish the Directorate-General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EPRS), Note to Members of the Bureau, D(2014) 8188..

<웹사이트>

유럽의회조사처 http://epthinktank.eu/

유럽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portal/en

[NARS----------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2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14.6.24	이수진 김보례
제31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태와 개선과제	2014.5.19	원시연
제30호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2014.5.2	정도영 조주현 서경택
제29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2.28	손을춘
제28호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실태와 개선과제 -친족 성폭력을 중심으로-	2013.12.31	조주은
제27호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 - 출입관리·시설관리·위해환경관리를 중심으로 -	2013.12.27	조인식
제26호	로컬푸드 직매장 전개 현황과 활성화 전략	2013.12.13	배민식
제25호	과학관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2013.12.2	권성훈
제24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식현황과 질 제고방안	2013.3.28	장영주

현장조사보고서 제33호

발 간 일	2014년 9월 19일
발 행	고현욱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54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05-9558
발간등록번호 31-9735020-000656-14

Ⓒ 국회입법조사처, 2014

현장조사보고서 제33호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005-9558